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31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누6868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9. 23. 선고 2016구합4324 판결
변 론 종 결	2017. 3. 8.
판 결 선 고	2017. 4.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10.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토지분 재산세 6,903,790원의 부과처분 중 4,957,7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해현

판사 왕정옥

판사 송혜정